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제3004호 |
|----------|--------|

제출년월일 2022. 8. 18.
제출자 김포시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통·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리 신설 및 지역여건에 따른 반 구획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리·반장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정비
 - 통·리·반장의 자격 삭제 (안 제6조)
 - 통·리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 삭제 (안 제7조)
 - 반장의 선임·등록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
 - 통·리·반장의 임기 삭제 (안 제9조)
 - 통·리·반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2조)
- 통·리 신설 및 지역 여건에 따른 반 구획 조정
 - 통진읍 : 서암9리-서암12·14리 경계조정, 마송17리, 마송18리, 마송 19리 신설 등
 - 양촌읍 : 양곡26리 신설, 학운11리 반 신설
 - 장기본동
 - 장기1통-장기2통 경계조정, 장기11통 공동주택 명칭 변경
 - 장기31통 신설
 - 사우동 : 사우15통-사우31통 경계조정
 - 운양동 : 운양4통 반 신설, 운양4통-운양7통 경계조정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여건에 따른 통·리 신설 및 반 구획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통·리·반 설치 조례상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리장 임명과 자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통·리장 임명과 해임 등에 관한 마을 내 분쟁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5. 참고자료

-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 통·리·반장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예정

김포시 규칙 제 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반장의 자격) ① 통·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리·반의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 구역과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2. 통·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은 새로 설치되는 통·리·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원만하게 통·리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리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통·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제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통·리장 후보자가 없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을 공개모집 하여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리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를 통해 통·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의 구성, 의결요건과 선거권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6조(공개모집) ① 읍·면·동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리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에는 해당 통·리 지역 10세대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단, 하나의 세대는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최종 통·리장 후보자로 선정한다. 단,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⑤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적임자로 선정된 통·리장 후보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읍·면·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김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읍·면·동장은 관할 읍·면·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후보자추천서 등의 주민 서명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통·리장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통·리·반장의 임기) ① 통·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달리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기만료일 6월 30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만료일 12월 31일

② 통·리·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통·리·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통·리·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통·리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통·리·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

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리·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5.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통·리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② 통·리·반장을 직권 해임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해당 통·리·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통·리장 또는 반장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면·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제10조(통리장증 발급 등) ①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통리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읍·면·동장은 통·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임명 후 10일 이내에 통리장증을 발급한다.

③ 통리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리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리장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통·리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통리장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장은 통리장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리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통리장증의 사용) ① 통리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리장은 직무 수행 시 항상 통리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반상회) ①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지역현안과 주민관심 사항
2. 국·도·시정의 홍보와 의견수렴
3. 주민불편 사항 등 생활민원
4. 그 밖에 지역행사와 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② 반상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③ 읍·면·동장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면 반상회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과 보상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통·

리·반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편의제공) 조례 제12조제2호에서 “교육훈련 등” 이라 함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교육훈련, 비교연수와 체육대회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소 | | 행 정 과 |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 명 | 행정과장 박 영 상 |
| | 팀 장 직위·성명 | 행정팀장 최 신 |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박 지 연(☎2531) |